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018 - 64 호
- 제 안 자 : 강서구청장
- 제안일자 : 2018년 11월 6일
- 회부일자 : 2018년 11월 8일
-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11월 28일) 회의 심사

2. 개정이유

재정건전성을 강화 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8. 12. 31.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조례 중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신설 (안 제6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같은법 부칙<제12687호, 2014.5.28.> 제4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 라. 입법예고(2018. 9. 19. ~ 2018. 10. 1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중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6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설
 - 안 제1조~제5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안 부칙 : 시행일(2019년 1월 1일부터)에 관한 경과 조치

※ 공항이주단지 택지분양 관련 개요

- 1997. 10월 ~ 2003. 6월 총 324필지 중 305필지 분양 완료 미분양 19필지

[서울지방법원에서 미분양 19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

- 남부지방법원 조정 결정(2011.11.16.)

- 미분양 19필지 국토교통부로 소유권 이전
- 대부사업으로 발생한 가설 건축물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철거하고 철거비용은 강서구청에 청구
- 2011년 11월 ~ 2012년 7월 대부 수익금은 서울지방법원에 귀속

-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부 수익금 정산 협의를 서울지방법원에 요청하였으나, 가설 건축물 미철거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 2억 3,357만원 중 2억 3천만원은 공탁하고 잔여액 3백 57만원은 특별회계에 예치중임.

○ 검토결과

현재까지 서울지방법원과 대부 수익금 정산이 진행 중으로 대부 수익금 정산 완료시까지 본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부칙 <제12687호, 2014. 5. 28.>

-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